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지 방 공 무 원 교 육 훈 련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교육훈련 경비의 반납과 관련하여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조·제35조 등).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도회의회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33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본인으로~” 이하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되어 있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행위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이 영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한 행위나 지방의회의 의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교육훈련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각각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교육훈련 시행계획의 수립) <u>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u> <u>함한다. 이하 같다)</u> 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 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제3조(교육훈련 시행계획의 수립) <u>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u> <u>함한다. 이하 같다)</u> 및 지방의회 의 의장[시·도의회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u>이하 같다)</u>]의회의 의장을 말한 다. 이하 같다]---.
제5조(교육훈련의 방법) ① ~ ③ (생 략) ④ <u>지방자치단체의 장</u> 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 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 육훈련과정을 소속 공무원의 전 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의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u> <u>회의 의장</u> ----- ----- ----- ----- ----- ----- ---
제6조(자기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④ <u>지방자치단체의 장</u> 은 과장과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에 대하여 업무목표 설정 및 목표달성도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u>행정자치</u> <u>부령</u>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6조(자기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u> <u>회의 의장</u> ----- ----- ----- <u>행정안전</u> <u>부령</u> -----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이수시간 달성도 등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하고, 그 이행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 반영 등)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에 적용할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교육훈련의 내용, 그 밖에 교육훈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범위에

-----.

제7조(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 반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

-----.

1. 2. (현행과 같음)

3.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③ -----

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렬 또는 직급 등 적정기준에 의한 구분 단위별로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통합교육훈련의 실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받는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받는 시·도
2. 위탁하는 교육훈련의 내용과 범위
3. 위탁하는 교육훈련의 관리와 실시 방법
4. 위탁하는 교육훈련의 관리 및 실시에 드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5. 그 밖에 교육훈련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

제9조(통합교육훈련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

1. -----

2. -----
--
3. -----

4. -----

5. -----

③ -----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

훈련과정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탁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위탁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위탁받은 시·도지사 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삭 제

⑤ (생 략)

제11조(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급·직렬·담당직무·경력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선발기준에 맞는 소속 공무원을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교육훈련대상자의 명단을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가 교육훈련과정별 선발기준을 크게 벗어난다고 인정되면 대상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의회의 의장-----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

③ -----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교육
훈련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
보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12조(교육훈련과 인사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은 신규임용후보자 및
신규임용자에 대해서는 그 직급
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
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에
보직(補職)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급 공
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할 때에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훈련과정
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승진임
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을 교육훈련 이수분
야와 관련된 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교
육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훈
련 이수 후의 보직 분야를 미리

-----, ----- 지방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교육훈련과 인사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
회의 의장-----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
회의 의장-----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
회의 의장-----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훈련 이수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분야에 보직
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여비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
로 선발된 소속 공무원에게 예
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훈련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
육훈련의 내용·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개선·발전시켜야 한
다.

② (생략)

제17조(교육훈련 교재 등의 요청)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훈련
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에 필요하
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의 장
에게 교재 및 시청각 자료 제작
이나 강사 지원 등 필요한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계획)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

제14조(교육여비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

제16조(교육훈련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교육훈련 교재 등의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

-----.

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계획) ① -----

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교육훈련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교육훈련대상자 선발 등의 교육훈련 준비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1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성적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한 소속 공무원 및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5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①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의 근무기간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1. ~ 6.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① -----

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수요원으로서
의 근무를 성실히 마친 공무원
을 승진 또는 전보에서 우대하
여야 한다.

제29조(직장훈련의 실시) ① 지방
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
로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시보(試補)기간 중
에 있는 지방공무원에게는 개인
별로 교육훈련지도관을 지정하
여 해당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
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
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직장훈련으로 전문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 의장-----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
회의 의장-----

-----.

제29조(직장훈련의 실시) ① 지방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
장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
회의 의장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
회의 의장 -----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평가 및 수료,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그 밖에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위탁교육훈련계획)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를 선발하고, 교육훈련경비를 부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무원 중에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32조(위탁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훈

-----.

제30조(위탁교육훈련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

제31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위탁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련을 받는 공무원의 교육훈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교육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교육훈련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교육훈련기관의 학칙을 준수하는 등 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에는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하여야 한다.

③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재(所在) 및 신상(身上), 교육훈련성적 또는 진도와 교육훈련 결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소

--.

②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

③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

④ -----

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교육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2. 교육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경비 외의 장학금, 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⑤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사직하려는 공무원은 귀국한 후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복귀명령)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목적을 크게 벗어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에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1. -----

2. -----

3. -----

⑤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제33조(복귀명령)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

제34조(복무의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위탁교육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6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에 면직 또는 휴직되거나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전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즉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분

제34조(복무의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1. · 2.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③ _____

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생략)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 경비 반납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 경비 반납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48